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48
----------	------

2024년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일자: 제32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9월 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후환경본부 여장권 본부장)

- 가.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평가 예외 대상에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추가(안 제4조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의 단서 조항 삭제(안 제14조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의 경우 평가서 검토 의견 통보기한 명시에서 제외함(안 제15조제1항).
-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8조제3항).
-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는 의견수렴 절차 전 사전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심의·자문사항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를 추가함(안 제22조제1항).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안 제22조제7항, 안 제24조).
-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을 “제외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사업자가 작성계획서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항).
- 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승인기관장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2항).
- 자문 활동을 한 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 (가) 개선의견: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토록 개정
 - (나) 조치내용: 미반영, 평가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 필요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의견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5.30.~6.19.) 결과: 의견 있음(반영)
 - (가) 제출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일 경우 조례상 평가서 검토 기간 수정 필요
 - (나) 조치내용: 반영, 제15조제1항 검토기간 후단에 단서 신설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임.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안 제4조	• 재난복구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4조	• 타법 개정(통합심의 의무화)에 따른 단서 조항 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5조	• 통합심의 대상 정비사업의 경우 결과 통보 기한 연장
안 제17조	• 재협의 요청 대상에서 사업자 제외
안 제18조	• 환경보전방안 제출 규정 신설(5일 이내, 승인기관장→시장)
안 제21조	• 재난·안전관리 공사는 의견수렴 절차 전에 사전공사 가능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22조, 제24조, 제31조	• 위원회 기능에 자문 추가, 심의 사항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 추가 • 위원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안 제25조	•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여부에 관한 사업자 재량권 부여
안 제27조	• 협의절차 면제 특례 대상에 재협의 대상도 포함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28조	• 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에게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부여

나. 검토의견

1) 상위법 등 개정사항 반영

- 안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¹⁾으로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1)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4호,(시행 2025.2.21.)

하는 것이고, 안 제21조제2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는 의견수렴 절차 전에 사전공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신속한 재난 복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14조제2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해진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27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1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절차 면제 특례 대상에 재협의 대상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2) 조례 운용상 미비점 보완

- 안 제15조는 현행 조례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내용’²⁾ 통보 기한(28일 이내)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른 통합심의 대상 정비사업을 제외하려는 것임.

즉, 현행 조례상 시장은 ‘협의내용’을 평가서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나, 통합심의 대상 정비사업의 경우 기한³⁾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통합심의 대상 정비사업에 대한 ‘협의내용’ 통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⁴⁾.

- 안 제18조제3항은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

2) 협의내용: 평가서 검토 결과(제14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

3) “양동구역 제4-2·7 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24.4.26.)부터 통합심의 개최(‘24.7.2.)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음.

4) 통합심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에 한정되며, 선행절차인 초안 단계(주민의견 수렴) 및 후속절차(보완서 작성 등)는 기존과 같게 진행됨.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사업자에게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제출 기한을 5일로 한정하는 것은 현행 조례 제13조의 평가서 본안 협의 요청 기한과 같게 설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25조(환경영향평가작성계획서 제출)는 심의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작성계획서 제출에 대한 선택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임.

작성계획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평가범위와 항목 등을 정하는 서류인데, 건축물 및 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작성계획서 제출 대신 서울시에서 고시한 심의 기준⁵⁾을 적용하고 있음.

즉, 안 제25조는 심의 기준 준수⁶⁾가 어려운 사업, 특히 리모델링과 같은 사업의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 적용 대신 작성계획서를 제출하는 선택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조례 제20조의 협의절차에 따르면,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할 때에는 협의내용 반영 여부 및 그 반영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28조(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는 협의절차 면제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평가서 초안에 대해 시장과 협의한 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22.8.4.)

6) 심의기준: 생태면적률 35% 이상,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 이상 등

3) 위원회 관련 규정 수정

- 안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1항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역할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심의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심의위원(자문위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22조제7항과 안 제24조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8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임.

이는 전년도에 수립된 '2023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위원회 개선계획⁷⁾'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 안 제31조는 위원회 위원에게 심의 수당과 별도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안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설된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7) '23.4.25., 기후환경정책과-6072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를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로, “사업의 환경보전 목표”를 “환경보전목표”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의견수렴 등)”을 “(의견 수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규칙”을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전단 중 “초안과 관계행정기관”을 “초안(관계행정기관”으로,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요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사업의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 이상의 구”를 “둘 이상의 자치구 (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받은”을 “송부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견수렴”을 “의견 수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법 제14조”를 “법 제14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견수렴절차”를 “의견 수렴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소신청인원”을 “최소 신청인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류사본”을 “서류 사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평가서등”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기간동안”을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로, “재대행하도록 하는”을 “재대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평가서”를 “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작성의 판단 기준은 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보완을 사업자에게 요구”를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내”를 “이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른 통합심의는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서 등”을 “평가서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을 “승인기관장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를 “이 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을 “승인기관장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의”를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보전방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제4항 중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을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협의의 절차를”을 “변경협의 절차”로, “변경협의의 사유”를 “변경협의 사유”로, “변경협의의 절차가”를 “변경협의 절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변경협의의”를 “변경협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사 중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를 “심의·자문 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되고”를 “맡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남은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회의 구성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구성원”으로, “개의하고”를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구성·운영 및 심의방법”을 “구성·운영, 심의방법 및”으로 한다.

6. 제20조제9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

⑦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23조제3항 후단 중 “위원 3분”을 “소위원회 위원 3분”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제25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중 “의견수렴”을 각각 “의견 수렴”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대상사업”을 “협의를 또는 재협의 대상사업”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를 “(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견수렴”을 “의견 수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할 때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해 시장과 협의한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과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2조에 따라 평가서의 심의·자문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제32조의 제목 “(평가서의 공개)”를 “(평가서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평가서 등”을 각각 “평가서등”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에너지개발의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u>대하여</u>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 뜻은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대해서는</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u>자연재해 대책법</u>」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 및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59조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u>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u></p>
<p>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p>	<p>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p>

현행	개정안
<p>사업자는 <u>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p>	<p>----- <u>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u>-----</p> <p>-----</p> <p>-----</p> <p>----- <u>환경보전목표</u>-----</p> <p>----- <u>환경영향평가</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u>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u></p>	<p>제8조(의견수렴 등) ① ----- <u>규칙</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u>초안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u></p>	<p>② -----</p> <p>-----</p> <p>-----</p> <p>----- <u>초안(관계행정기관</u>-----</p> <p>-----</p> <p>----- <u>요약</u></p> <p>----- <u>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u></p>

현행	개정안
<p>(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업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u>서류사본</u>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u>환경영향평가서</u>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u>환경영향평가업자</u>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u>기간동안</u>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서류</u> <u>사본</u>-----.</p> <p>③ ----- ----- <u>평가서등</u>----- ----- <u>평가업자</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 ----- ----- <u>기간 동안</u> ----- -----.</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4. 평가업자가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 하지 아니할 것. 다만, 「<u>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u>」 제26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u>재대행하도록 하는</u> 경우는 제외한다.</p>	<p>4. ----- ----- ----- ----- ----- 「<u>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u>」 (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 제26조----- ----- ----- ----- <u>재대행하는</u> -----.</p>
<p>5. <u>평가서 협의절차</u> 과정에서 공무원과 심의위원에게 청탁, 향응, 금품제공을 하지 아니할 것</p>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작성의 판단 기준은 「<u>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u>」 제23조를 준용한다.</p>	<p>5. <u>평가서등</u> ----- ----- -----</p>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작성의 판단 기준은 <u>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u></p>
<p>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p>	<p>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 ----- ----- ----- ----- -----</p>

현행	개정안
<p>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평가서</u> 등을 보완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③ (생략)</p> <p>제17조(재협의) ① <u>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u>은 제15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제15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제15조에 따른 협의 및 <u>제17조</u>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p> <p>3.·4. (생략)</p>	<p>----- -----.</p> <p>1.·2. (현행과 같음)</p> <p>② ----- <u>평가서</u>등 ----- -----.</p> <p>1.·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재협의) ① <u>승인기관장등</u>-----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이 조</u>----- ----- -----</p> <p>3.·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③ (생략)</p> <p>제18조(변경협의) ① (생략)</p>	<p>② ----- <u>승인기관장등</u>-----</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변경협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u>대하여</u>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u>시장의</u>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신설></p> <p>④ (생략)</p>	<p>② -----</p> <p>-----.</p> <p>----- <u>대해서</u>는 -----.</p> <p>③ -----</p> <p>----- <u>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u> -----. <u>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보전방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p> <p>③ (생략)</p> <p>④ 사업자는 대상사업 착공 후에</p>	<p>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현행	개정안
<p>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따른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u>의 평가항목 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 ----- <u>사</u> <u>후환경영향조사 대상</u>----- ----- ----- ----- -----.</p>
<p>⑤·⑥ (생략)</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u>변경협의를 절차</u>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u>변경협의를 사유</u>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u>변경협의를 절차</u>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 ----- <u>변경</u> <u>협의를 절차</u> ----- ----- ----- <u>변</u> <u>경협의 사유</u>----- ----- <u>변경협의 절차</u> ----- -----.</p>
<p>1.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u>변경협의를 대상</u>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p>	<p>1. ----- ----- ----- <u>변경협의</u>----- ----- -----</p>

현행	개정안
<p>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u>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u>」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p> <p>② 사업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제8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에 대한 <u>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u> 후 사전공사의 근거, 내용 및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u>통보하여야 한다.</u> <단서 신설></p> <p>③·④ (생략)</p> <p>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p>	<p>2. ----- ----- ----- ----- <u>시행규칙 제15조제1항</u> ----- -----</p> <p>② ----- ----- ----- <u>의견수렴 절차를 거친</u> ----- ----- ----- ----- ----- <u>통보하여야 한다</u> ----- (<u>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다만, 제1항제2호의 공사 중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행할 수 있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p>

현행	개정안
<p>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생략)</p> <p>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남은기간으로</u> 한다.</p> <p>⑥ 위원회의 회의는 <u>회의 구성원</u> 과반수의 참석으로 <u>개의하고</u>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위원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u>심의·의결에서</u> 제척되며, 위원이 <u>각 호의 어느 하나</u></p>	<p>의위원회) ① ----- ----- <u>심의·자문 하기</u>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제20조제9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말고</u>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남은 임기로</u> ----- -----.</p> <p>⑥ ----- <u>규칙으로</u> 정하는 구성원 ----- <u>개의하고</u>, ----- -----.</p> <p>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p>

현행	개정안
<p><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u></p> <p>1. <u>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회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u>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3조(소위원회) ①·② (생략)</p> <p><u>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u></p>	<p><u><삭 제></u></p> <p><u>⑨ ----- 구성·운영, 심의방법 및 -----</u></p> <p><u>-----.</u></p> <p>제23조(소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u></p> <p><u>-----</u></p> <p><u>-. ----- 소위원회 위원 3분-----</u></p>

현행	개정안
<p>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p> <p>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p>----- ----- -----.</p> <p>제24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p>
<p>제2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① 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별표 1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작성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① ----- ----- ----- ----- 제외할 수 있다)----- ----- ----- -----.</p>

현행	개정안
<p>②·③ (생략)</p> <p>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①·② (생략)</p> <p>③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와 제25조제2항에 따른 <u>의견수렴</u>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검토결과와 <u>의견수렴</u> 결과를 제8조제2항의 평가서 초안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p> <p>① 시장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1. <u>대상사업</u>의 규모가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p> <p>2·3.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8조(<u>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의견수렴</u> ----- -----.</p> <p>④ ----- ----- <u>의견수렴</u> ----- -----.</p> <p>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p> <p>① ----- ----- ----- -----.</p> <p>1. <u>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사업</u>----- ----- ----- -----</p> <p>2·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u>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u></p>

현행	개정안
<p><u>의무</u>) ① 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제8조의 <u>의견수렴</u>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② (생략)</p> <p>제31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제22조에 따라 평가서의 심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다만, 「서</p>	<p><u>의무 등</u>) ① ----- ----- ----- <u>의</u> <u>견수렴</u> ----- ----- -----.</p> <p>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할 때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해 시장과 협의한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과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31조(수당 등의 지급) ----- ----- <u>사람에게</u>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제22조에 따라 평가서의 심의·자문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p>

현행	개정안
<p><u>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3. (생략)</p> <p>제32조(평가서의 공개) ①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u>평가서</u>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u>평가서</u>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평가서</u>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p> <p>③ (생략)</p> <p>[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4조 및 제13조 관련)</p>	<p>3. (현행과 같음)</p> <p>제32조(평가서등의 공개) ① ----- ----- ----- ----- <u>평가서등</u> ----- -----.</p> <p>② ----- ----- ----- <u>평가서등</u>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평가서등</u>----- -----</p> <p>③ (현행과 같음)</p> <p>[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4조 및 제13조 관련)</p>

현행			개정안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3. 에너지 개발	<p>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p> <p>1)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p>	<p>○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p>	3. 에너지 개발	<p>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p> <p>1)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p>	<p>○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p>